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19 선고 2021가단52330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6. 7.

판 결 선 고 2023. 7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6. 9. 13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은 9,735,8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,735,816원 및 이에
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 주식회사(이하 회사명에서 '주식회사'는 생략한다)는 2015. 7. 17. D에게 8,000,000원을 이자율 연 27.9%, 지연이자율 연 34.9%, 변제기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여금채권'이라 한다).

나. E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329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'D은 E에게 4,146,795원 및 그 중 3,922,988원에 대하여 2017. 8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7. 8. 25. 확정되었다.

다.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8. 9. 13. E에서 F로, 2021. 6. 18. F에서 원고로 각 양도되었고, D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.

라. 망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,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, 자녀 H, I, J, K, D이 있었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9. 13. 협의분할(이하 '이 사건 협의분할'이라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. 1. 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피고는 2020. 12. 21.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. 12. 2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바.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21. 8. 31. 기준으로 9,735,816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9. 13.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/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L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,735,81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9,735,8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협의분할이 존재하는지 여부

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D과 피고 사이에 2016. 9. 13. 이 사건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.

그러나 망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피고, 자녀 H, I, J, K, D이 있었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9. 13.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. 1. 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D과 피고 사이에 2016. 9. 13. 이 사건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D을 포함한 일부 상속인들은 망 G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,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“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).

나. D의 무자력 여부

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, 통영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이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D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에 의하면 D의 추정연소득금액은 48,000,000원 정도이고, D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부터 2022년까지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에 대하여 별다른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점,¹⁾

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, ③ D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7. 6. 15. 비로소 월납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협의분할일인 2016. 9. 13. 당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

D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,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렬

-별지 목록-

부동산의 표시

경상남도 통영시 전 661평방미터

1) 이 사건 협의분할일로부터 한참 지난 뒤인 2021. 5. 20. M에 대하여 49만 원의 연체가 발생한 사실만이 확인된다.